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 9. 1.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8.21.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5.8.25.

다. 상정일자 : 제19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5.9.1.)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청소행정과장 김 종 웅

가.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15.1.1.)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 삭제 또는 신설하여 명확한 청소행정의 업무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함

나. 주요내용

- 1)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상세 규정 마련 (안 제9조의 2 ~ 제9조의 3)
 -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조례 규정 미비로 보관장소 지정,

처리 기준·방법 및 관리·보고 조항을 상세화하여 규정

2) 영업장 배출 연탄재 수수료 부과 조항 신설 (안 제10조제2항 제2호)

-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무상 수거하되, 영업장 배출 연탄재는 종량제 수수료 부과

3) 종량제 수수료 인상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 서울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자치구별 감량목표 의무 할당제 시행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시급

4) 종량제봉투의 제작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1조)

- 종량제봉투 제작시 위조방지 기술 도입

5) 종량제봉투 공급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23조제2항)

-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종량제 봉투 공급의 효율적인 방식을 검토하여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6)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세입처리 조항 신설 (안 제32조제1항)

- 지방재정법 제15조, 제34조 및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구 세입조치

7) 종량제봉투 무료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35조)

- 지급기준을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2.1.1.)에 따라 1인당 60리터 지급하되 가구당 최대한도를 매월 120리터로 규정

8)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삭제

- 과태료 부과 기준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신설(2011.4.6.)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시 시행령을 적용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규정을 개정, 삭제 또는 신설하고, 서울시 종량제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폐기물 배출억제 및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안 제9조의2에서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 등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무상수거하되,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규정하였음.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일부를 세입처리하지 않고 대행폐기물처리업자의 수집운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대행업체 운영방식인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및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14.4.2)에 따라 제32조제1항에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은 구의 수입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재정 관련 법 위반을

해소 하였고, 안 제36조의 과태료 부과 및 처분 통지 등 관련 규정은 과태료 부과와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신설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음.

- 안 제18조에서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주민부담률 현실화 추진계획” 및 “서울시 종량제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의거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청소예산 자립도 향상 및 쓰레기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종량제봉투 가격을 생활폐기물용은 2016년까지 현행 대비 종량제 봉투별 평균 28.7%, 2017년부터는 평균 44.5%인상하였고,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용은 2016년까지 평균 76.9%, 2017년부터는 평균 96.5% 각각 인상하였음. 특수규격봉투 가격(50ℓ)은 현행 1,800원에서 2016년까지 4,600원, 2017년부터는 5,100원으로 인상하였음.

서울시에서는 2015년 공공처리시설 쓰레기 반입량 의무 할당제를 시행하여 생활쓰레기 배출 억제를 위한 자치구별 감량목표를 의무적으로 할당하였고,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서울시 종량제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구 재정여건 개선 및 폐기물 배출억제 및 감량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였음.

현행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폐기물 수집·운반비용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가 처리비로 쓰이고 있으나 2013년 총 처리비 11억1,600만원 중 구부담이 9억4,500만원으로 85%, 주민부담이 1억7,100만원

으로 15%, 2014년의 경우에는 총 처리비 11억5,400만원 중 구부담이 9억9,300만원으로 86%, 주민부담이 1억6,100만원으로 14%로 쓰레기 처리비에 대한 구부담액이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음.

2015년8월11일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로구와 용산구 등 19개구가 서울시 종량제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한바 있음.

종량제봉투의 가격 인상은 서울시의 종량제 수수료 인상안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차이나는 현행 종량제봉투 가격을 통일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준원가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는 현행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로 구 재정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과 관련, 주민들이 느끼는 인상 체감률은 보다 민감할 수 있는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의 필요성 및 그에 따른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개선으로 주민편익이 증가된다는 점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